

지정번호

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

1. 기관의 명칭:
2. 소재지:
3. 대표자 성명:
4. 취업교육 범위: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

직인

※ 비고

1.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